

골판紙包裝 · 物流産業政策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經濟行政規制 緩和總力 877件 規制 緩和 · 企業經營 活力

정부는 그간 「신경제 5개년계획」 일환으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창의력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약 2,500여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법령의 정비와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경제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하여 94년 4월말 현재 1,093건의 개선 대책과제를 확정, 이 가운데 877건에 대한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일반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행정쇄신위원회」에 의하여 94년 4월말 현재 1,583건의 개선 대책과제를 확정된 후 이 중 781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한편, 정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설립절차, 법정 의무 고용이행 등에 관한 시행령, 규칙, 고시 제정을 완료,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경쟁을 통한 효율화와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있으며,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첩경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 선진국의 경제행정 규제 선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영국의 통신산업의 규제완화에 의한 독점규제, 미국의 항공산업의 규제완화에 의한 복수제 경쟁으로 Cost Down 과 대 소비자서비스 향상을 가져온 것이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행정 규제란 도로의 신호등과 같이 신호등이 대단히 필요하지만 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으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되어 시속이 떨어져 비능률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규제도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조성과 주도세력 형성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이나, 그 규제가 지나치거나, 경쟁이 오히려 효율성이 큰 상황에서는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94년 상반기 제4차-6차 경제행정규제완화 계획중 골판지포장 및 물류산업 관련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 사용 비율 축소
- ②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신청시 주무부처의 투자확인 절차 간소화
- ③ 회사채 발행 물량 조정상 제재법인 기준의 투명성 제고
- ④ 외화 대출제도 개선
- ⑤ 화물장치 방법 개선
- ⑥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의 핵심부품, 관세감면
- ⑦ 제지산업 등의 업종별 기준 공장 면적율 재조정
- ⑧ 전력 요금의 계절 차등 적용제 개선
- ⑨ 직업훈련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 ⑩ 일반 폐기물 소각로 설치에 대한 중복규제 철폐

① 과제명 :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축소

●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現況 및 問題點	<p><현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음식점 등 유흥업소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시에는 일정비율(대기업 40%, 중소기업 30%)이상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동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접대비는 손금부인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의 음식값 지출 등 접대비 지출이 많지 않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 지방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하향 조정
● 刷新 方案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접대비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사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30%로 적용 * 현행: 대기업 40%, 중소기업 30%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치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93.12.31)

② 課題名 :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청시 주무부처 등의 투자확인절차 간소화

● 關聯法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동시행령 제57조
● 現況 및 問題點	<p><현행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설비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등의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제도 운영 ○동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주무부처 등의 투자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 : 첨단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상공자원부장관), 공해방지시설(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산업재해예방시설(노동부장관) 등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등의 투자확인 절차를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투자확인 절차는 생략하거나, 존치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입금표, 사진, 계약서, 사양서등 제출 폐지)
● 刷新 方案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설비등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의 특정설비의 경우 당해 설비의 해당여부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각 소관부처의 투자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투자확인업무가 대부분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시설의 확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의 확인대상을 축소·생략(조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하거나 존치하는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안(행태·관행개선사항) 강구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94. 1/4분기까지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③ 課題名 : 회사채 발행 물량조정상 제재
법인기준의 투명성 제고

●關聯法令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
●現況 및 問題点	- 회사채 물량조절시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 유주식 대량매각법인 및 증권관계법규 위 반법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물량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을 부과 ○불이익 부과기준은 증권감독원 및 증권업 협회의 내부기준으로 운용 -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에 불이익 부과기간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발생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 명백히 제재의 기간 및 기산시점등을 설정 하여 제재법인의 자금조달에 대한 예측 가 능성 제고
●刷新 方案	-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유주식 대량매각법 인에 대한 제재 폐지 - 증권관계법규 위반법인에 대한 제재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에 불이익 부 과기간 상한 등을 명시하여 대상법인의 자 금조달상 예측 가능성 제고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 '94.3월까지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 보완

④ 課題名 : 외화대출제도 개선

●關聯法令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現況 및 問題点	- 〈현황〉 - 용자대상 ○시설채 수입자금 : 제조업, 연구용, SOC, 항공기 도입 - 용자 비율 ○시설채 수입자금: 대기업 80%, 중소기업 90% - 용자기간: 1~8년 〈문제점〉 - 용자대상, 용자기간, 용자비율 제한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저리 외자 조달 기회 제한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용자대상, 용자비율 등 제한을 대폭 완화
●刷新 方案	- 용자대상 확대 ○제조업 시설채 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도 입추가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용자비율 인상 {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100% - 용자기간 연장 : 현행 1-8년에서 1-10년 으로 연장 - 한은 예탁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대출 Spread의 축소 유도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 외화 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94.1)

㉔ 課題名 : 화물장치방법 개선

● 關聯法令	관세법 제84조,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14조
● 現況 및 問題点	<p><현황></p> <p>○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적용할 화물장치방법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세관 검사 공무원의 물품검사, 운반 또는 적출입 적재하중 또는 침수습기의 축적등으로 화물의 손상이 없도록 화물장치 기준에 예시된 화물의 적재높이, 교통로, 물품의 성질에 따른 적재방법, B/L별 구분적재, 화물표 부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p> <p><문제점></p> <p>○화물장치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은 화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기준에 화물의 종류, 장치장소의 특성, 장치방법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현실성이 없음</p>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p>- 특허보세구역 설영인 책임하에 화물장치가 가능하도록 화물장치기준 폐지요망</p> <p>- 화물 장치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설영인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하도록 보세화물 관리방법 개선</p>
● 刷新 方案	<p><수용></p> <p>- 세관의 화물관리와 수입검사 감정에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하도록 보세화물 관리방법 개선</p>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p>- 관세법 시행세칙(보세화물 관리세칙) 개정 ('94.6)</p>

㉕ 課題名 : 공장 자동화기계, 기구, 설비의 핵심부품 관세감면

● 關聯法令	관세법 제28조, 제28조의 4, 제28조의 5
● 現況 및 問題点	<p>- 공장자동화 등의 시설기계류 및 항공관련 용품의 완제품 수입 경우 관세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국내업체가 이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품 수입시에는 감면제도가 없어 역관세 현상 발생</p> <p>○완제품 수입시 : 1% - 4.5%</p> <p>○부 품 수입시 : 9%</p> <p>- 완제품 수입시 관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이를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한 제조용 원료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역관세 현상으로 국산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완제품 수입 수요만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쟁력 배양이 무산</p>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p>- 시설기계류 및 항공관련용품에 대한 국내 제조용 원료품 수입시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완제품 수입과의 역관세 모순을 시정토록 수입완제품 감면율보다 높거나 동일수준 이상의 감면제도 운용 필요</p>
● 刷新 方案	<p><수용></p> <p>-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6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기계 · 기구 · 설비의 핵심부분품에 대하여 '93 관세법 개정사항에 반영</p> <p>* 항공관련 물품의 제조를 위한 원료품 수입시에는 현행규정상으로도 관세감면되고 있음</p>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p>- 기 조치</p> <p>- 관세법 개정('93.12.31)</p>

㉗ 課題名 : 제지산업 등의 업종별 기준 공장면적을 재조정

●關聯法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
●現況 및 問題点	○제지산업 기준 공장면적율은 3,000㎡이하는 15~25%, 3,000㎡ 이상은 30~40% 로 원료 비축면적 부족 ○제품 1톤 생산에 약 1.3톤의 원료가 필요하므로 수입 또는 국내 수집 폐지 등의 장기안정적 재고 확보 위한 적재면적 필요
●關係 機關 民間·團體 등의 意見	○기준 공장면적율을 3,000㎡ 미만은 10~15%, 3,000㎡ 이상은 15~22%로 완화
●刷新 方案	○제지업종을 포함한 업종별 기준 공장면적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 : '94.2

㉘ 課題名 : 전력요금의 계절 차등적용제 개선

●關聯法令	전기사업법 제17조 한전 전기 공급 규정 제65조
●現況 및 問題点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연중 평균 사용량과 동일한데도 6.1~8.31일간 하절기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요금도 33.3%가 인상, 경영부담 가중
●關係 機關 民間·團體 등의 意見	○중소기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상대적 고율의 전력요금 단가를 개선 ○요금산정기준 개선 - 하계기간 단축 : 6. 7, 8월 → 7월 20일 ~8월 20일 - 하계주간 시간대 조정 : 08시~18시 → 13시~15시

●刷新 方案

○전력요금의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적용 제도는 냉장용 수요 때문에 최대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 낮 시간대의 요금을 타계절, 타시간대 요금보다 다소 높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시행사유는 여름철 낮 시간대의 경우 발전 원가가 비싼 석유와 가스발전소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상 원칙에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제도의 시행 효과로서는 여름철 낮 시간대의 최대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어 신규발전소 건설소요를 감축하고 그 결과 전원개발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부하를 평준화시킴으로써 발전설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하게 됨

○반면에 비교적 최대전력수요가 낮은 타계절, 타시간대에는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여름철 낮 시간대보다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수용가 입장에서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형평을 이룰 수 있게 됨

○따라서 여름철 낮 시간대의 요금인하는 전력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는 신규발전소 건설소요와 발전 원가가 비싼 석유, 가스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므로 전원개발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수용가 입장에서 여름철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어 주면, 인하분 만큼 타계절, 타시간대 요금을 인상해야 하므로 연간 기준으로는 부담에 차이가 없게 됨

○한편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발전된 요금제도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

<요금산정기준 개선>

- 하계기간단축: 6. 7, 8 → 7~8월

- 하계주간시간대 조정: 08시~18시 → 10시~12시, 14시~17시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한전전기공급규정 개정: '94 상반기중

⑨ 課題名 : 직업 훈련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關聯法令	직업훈련기본법 제 24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現況 및 問題点	○직업훈련 의무 사업주는 매년 직업훈련 의 무비용 만큼을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 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동 의 무비용산정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업 별, 기업규모별로 책정고시하는 훈련비율 을 승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직업훈련 의무비용이 전 근로자의 임금총 액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임금의 범위가 너 무 광범위하고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여 객 관성이 결여되고 있음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임금총액을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 로 완화
●刷新 方案	○직업훈련의무를 '87이전에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정비용 만큼을 양성토록 부 여한 결과 사업주가 인력수급과는 관계없 이 훈련경비가 저렴한 직종을 양성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 그 기준과 의무부과 방법을 현행과 같이 변경한 것임 ○임금 총액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각종 수당 이 모두 포함된 것임. 따라서 임금총액 대신 기본급을 기준으로 의무비용을 산정하는 것 은 위법 개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 무적인 차원에서조차 기본급보다 임금총액 파악이 더 용이하며 노동관계법상 기본급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민간의 건의 내용은 훈련의무 부담의 경감이 궁극적인 내용이므로 훈련 비율 확정과 관련하여 신발 등 노동집약업 종과 수출감소 업종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94 상반기까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⑩ 課題名 :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에 대한 중복 규제 철폐

●關聯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수질 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現況 및 問題点	<현황> -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시 폐기물관리법 에 의거 승인받은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문제점> -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환경법령 에 의거 승인 또는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초래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 업체의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동일 관청에 서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해 받는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 및 관계법규 개정이 필요함
●刷新 方案	-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설치 승인시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관련법령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일괄 처리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 폐기물관리법 개정 : '94년 - 배출 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 요령 개정 : '94년

⑪ 課題名 : 법정 의무 고용인원 미 채용시 행정 단속 완화

● 關聯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및 제 16조
● 現況 및 問題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안전 관리자(1-4인) 및 보건관리자 (1-3인)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미선임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입건(감독관 집무규정) ○ 법정 의무고용 인원의 결원발생시 충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과잉 단속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 자격 종류별로 결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예:영양사 6개월, 환경기사 3개월 등)
● 刷新 方案	○ 안전, 보건관리자 결원시 20일의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 '94년 상반기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⑫ 課題名 : 환경 관리인 미임명시 벌칙 완화

● 關聯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제5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제58조
● 現況 및 問題點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신고하여야 함 (미 임명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사 등 법정 의무 고용인원이 갑자기 퇴직한 후, 재충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 점검시 지적된 경우 -여유기간을 주지않고 1일이라도 미채용 상태일 경우 무조건 고발 -대표자를 출석시켜 진술조사를 하는 등 과잉단속으로 부담 초래
● 關係 機關 民間 · 團體 등의 意見	○ 자격 종류별로 퇴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 (예:3개월)을 두고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刷新 方案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인의 예고치 않은 퇴사, 사망등으로 인하여 즉시 환경관리인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의 적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용 유예기간 설정
● 必要 措置 事項 및 推進 日程	○ 대기 ·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을 95년중 개정

<以上 資料 : 經濟企劃院>

농산물 종합포장센터 설치 유통개선 UR대응 농특세 투자사업계획 발표

정부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투자계획(94.-2004년)을 수립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농특세 15조원 가운데 60.5%인 9조 7백 75억원을 농어업경쟁력 강화부문에 집중 배정, 농어업의 체질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중 물류센터건설 등 유통구조 개선등에 1조 4천 550억원을 투입 대도시 물류센터를 수도권에 4개소, 부산권에 2개소, 각도에 1개소 등 모두 16개소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산지별 종합포장센터 160개소를 운영하여 선과기등의 설치와 농산물의 상품화, 자동 포장화를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개혁방안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창동과 신정동에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하반기중 물류센터 건설을 착공기로 하였으며, 충북 청주지역은 청주공항 주변 2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26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하였고, 나머지 13개소는 개소당 3만평 규모를 기준으로 올해중에 부지 확보를 마칠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순회수집 사업을 전 농협에 확대하기 위하여 57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단위조합들이 1천대의 농산물 수송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소포장 양곡판매 등록제 완화 쌀포장용 골판지 상자 개발 활발

농림수산부에서는 양곡판매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5kg이하의 쌀 포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94. 5. 25)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은 등록제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토록하여 양곡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았던 점

에 비추어, 금번의 개정조치는 소매점등에서도 소포장 들이 쌀의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된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소포장 쌀에는 반드시 생산지, 생산년도, 생산또는 가공업자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품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쌀포장재의 골판지 포장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골판지 포장업계의 상자형식의 설계 개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쌀 유통용 포장이 가마니에서 크라프트지대, 합성 수지대로 바뀐후, 최근에와서 E골 또는 B골 골판지상자가 쌀 포장용으로 상당량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붓고와 관련하여 일본국이 우리나라 J사로부터 쌀 포장용 E골 골판지상자를 2kg들이(전개면적 530-587mm), 3kg들이 (456×658mm) 5kg들이 (660×750mm) 약 1억원의 골판지상자를 직수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골판지 배합은 SC240 × B160 × A200의 E골 골판지 라고 한다.

고용 보험제 수혜는 근로자와 사업주 95.7월 시행, 실업걱정없고·직업훈련지원

노동부에서는 신경계계획 일환으로 93. 12.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고용조정 및 직업훈련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 수준을 마련하는등 고용 보험의 세부 사업내용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준비 작업을 거쳐 95. 7. 1일부터 『고용 보험제』가 본격 실시된다.

동 고용 보험제의 노동부자료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보험제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고용보험제의 주된 사업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실업급여는 실직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제에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여 설정할 계획이다.

2.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

① 고용보험제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12개월이상 근로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이 직전 임금의 50%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며,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30 - 210일을 한도로 지급된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실업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빠른 시간내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 한다.

②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은 비 자발적 이직자로 한정됨으로써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된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발적 이직이 늘어날 소지를 배제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이직후의 생계지원으로 종전 보다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3. 고용 보험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

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고용변동 상황을 전산 관리하게 되고, 고용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을 구하는 기업에게 구직 정보 및 노동시장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토록 지원 하게 된다.

4. 고용보험제는 기업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

고용보험제는 이제까지의 직업훈련 의무제와는 달리 기업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 훈련시킬때,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며 따라서, 고용보험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5. 고용보험료의 부담 수준

고용보험료의 부담 수준은 임금총액의 1.5%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1/2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 1/2을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는 임금 총액의 1.0% 내외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000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수준이 훨씬 작아 지게 된다.

'94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확대 보일러 개체도 대상, 연리 5%

상공자원부에서는 '94년도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지침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61호)를 개정하여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부문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 자금 지원 지침에 의하면 융자지원 가능 부문에 속하는 제지 공정의 절약 시설을 살펴보면 지료농도 10% 이상으로 해리 시킬수있으며, 농도의 자동조절이 가능한 고농도 펄퍼, 지료 회석 없이 3-4% 농도로 정선 처리함으로써 농축 공정이 불필요한 중농도 정선 스크린, 에너지 절약 장·단 섬유 분리 장치와 면압 탈수 장치, 고압 탈수장치, 스팀박스 등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은 연리 5-7%,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60-90% 범위에서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다.

이들 절약시설 설치사업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자금규모를 감안하여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접수순으로 추천 지원키로 하였다. 신청문의 및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 기금관리부 (T.02-520-0294~5)이다.

1. 에너지 합리화 용자지원 대상자

		사 업 명	용 자 지 원
		대 상 자	
<p>■절약시설설치</p> <p>- 산업체 절약시설</p> <p>기업규모에 제한없이 지원</p>	<p>●용자대상은 [별표1]의 용자지원 세부내역에 따르되, 기업규모별 용자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노후보일러는 개체사업에 한하여</p>		
	시 설 분 류	기 업 규 모	
		중 소 기 업	대 기 업
	A. 에너지수요관리 및 열병합발전 설비	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자	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자
B. 에너지고도 이용설비	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자	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자	
C. 고효율 제품 생산시설	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자		

지구환경정화 CAMPAIGN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삽니다.

Save Our Streams

2. 용자지원세부내역(골판지포장 · 물류해당부문)

구 분	용 자 지 원 세 부 내 역	비 고	시설분류
■제지공정의 절약시설	1)해리 및 정선장치		
	● 고농도 펄퍼	- 지료농도를 10%이상으로 해리시킬 수 있으며, 농도의 자동 조절이 가능한 펄퍼	B
	● 장 · 단 섬유 분리장치	- 장 · 단 섬유를 분리하여 장섬유로만 선택적으로 고해하므로 고해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치	B
	● 중농도 정선스크린	- 지료를 희석없이 3~4%의 농도로 정선 처리하므로 농축공정이 불필요한 설비	B
	2) 탈수장치		
	● 면압 탈수장치	- 면압 탈수 너비가 200mm이상인 것으로 유압 및 진공장치등 포함	B
	● 고압 탈수장치	- 선압이 350 kg/cm ² 이상인 것으로 압력 및 유인장치 등 포함	B
	● 스팀박스	- 탈수공정에 설치한 스팀 Shower System	
	● 고압여과 탈수장치	- 필터가 수평으로 놓여 있고, 콘베이어형 여과포를 채택한 것으로 압착 탈수 후 케이크에 고압공기를 불어넣어 수분을 극소화시키는 것	B
■에너지 사용 노후설비의 개체	● 보일러	- 개체할 보일러가 1톤이상으로서 기존 보일러 용량의 1.5배를 상회하지 않는 보일러 개체사업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 노후보일러 개체	- 개체할 보일러가 1톤이상으로서 기존 보일러 용량의 1.5배를 상회하지 않는 보일러 개체사업	
■기타설비	●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접비교시험(측정)한 결과 단위설비가 동일종류보다 10%이상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		

中小企業固有業種 골판紙 및 골판紙箱子 製造業

1998年 以後에도 解除留保 繼續存置

大企業 自社그룹 内部供給獨占이 理由

상공자원부는 지난달 13일 237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94년 9월 1일부로 배합사료 등 58개 품목을, 95년 1월 1일부로는 이륜차용 안전모 등 42개 품목을, 97년 1월 1일부로는 선반 등 49개 품목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을 발표하고, 단계적해제 대상업종을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수요변화와 대체품 개발로 사양화된업종, 외국 상품의 점유율과 수입 증가율이 높아 고유업종 지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새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진출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골판지, 골판지 상자, 우산, 양산 등 89개 업종에 대하여는 98년도 이후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에 따르면 지류포장산업 관련 업종중 판지상자(백판지상자)제조업은 1997년 1월 1일 부로 해제예시되는 외에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과 크라프트지대 제조업은 1998년 이후에도 계속 고유업종으로 존치 해제유보하는 무기한 비 예시 업종으로 책정 발표하였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예시내용과 해제 유보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94. 9. 1 해제 (58개)

배합사료, 김치류, 장류, 국산차, 바이오에너지, 수산물통조림, 강관전주, 폴리에틸렌 피복강관(400A이하), 쌀통, 고체가성소다, 액상·고상염화아연, 황산알루미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소석회, 유기계면활성제, 조제계면활성제, 규산소다, 황화소다, 부동액, 브레이크액, 손목시계케이스, 전동체인호이스트, 소화기, 소방호스 및 소방용금속구, 가스미터기, 구명정, 화재경보기류, 피뢰탄기반, 콘넥타류(단자), 무정전전원장치, 등안정기, 아크용접기, 배선기구, 전기도관용조인트 및 부착물, 저항용접기, 정류기, 순방모직물, 혼방모직물, 기타솜, 순방모사, 혼방모사, 부직포, 침낭, 책선반, 서가, 보관상자, 학교용책걸상, 도서카드함, 공류, 슬라이드패스너, 싱크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피렌 필름(식품포장용 랩), 사진제판, 점토기와, 복층유리, 타일시멘트, 흡관

■95. 1. 1 해제 (42개)

이륜차용 안전모, 지대봉사, 부스공중전화, 가늌쇠, 합성수지제끈, 성냥, 유리용도가니, 방열기, 유창청소업, 작업용장갑, 동력탈곡기, 철재학생용책걸상, 박용송풍기, 흑판, 비, 석유심지, 양초, 장부책, 포프라제품, 사료절단기, 실험대, 수동식밸브, 천막, 박용전기방식제, 악기, 염화비닐열수축라벨, 구명탄용연소기, 노브, 회계장, 현창, 시내단자함, 박물관진열대, 동복당선, 배낭·수통피·안전삽피, 선등, 가발, 구명탄 난로, 맨홀, 콘크리트벽돌, 스탬프, 책장, 베어링용강구

■97. 1. 1 해제 (49개)

선반, 가정용보일러, 박용관음쇠, 휴대용케이스류, 바인더, 땀납, PP직물부대, 기타낚시장비, 카본지, 발포폴리스티렌내포장용 성형제품, 울타리철선, 탁구대, 밀링기, 철망, 침강탄산칼슘, 미강유, PE및 PP필름, 전자메가폰, 안경테, 가스용접기, 종이컵, 전자기기용퓨즈, 판지상자, 증기보일러, 롤러체인, 리클로우저, 소형조타기, PE부대, 이불·요, 물감, 의료용수술기구, 인터폰, 헤드폰, 연하장, 화장용분첩 및 패드, 난방용보일러, 일반선박, 가방, 연습장, 마그네트선, 버너, 핸드백, 탱크리닝머신, 세탁비누, 이어폰, 마네킹

■해제 유보 (89개)

우산, 양산, 모조장식품, 노트, 일기책, 앨범, 유아용승용물, 봉제완구, 지우개, 거울판, 크레용파스텔, 스테인리스용접관, 곡물건조기, 오일크리너, 자동소화기, 피난기구, 축압기, 선박용문, 소형프로펠러, 박용전선, 쇠뿔,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 아연말, 고압가스용기,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 도금업, 동모세관, 상업용저울, 벽시계, 탁상시계, 길이계,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드, 안테나, 트랜스포머, 플러그 및 잭, 철심코아, 리드와이어, 컷아웃스위치, 고장구간자동개폐기, 안경렌즈,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봉합침, 보청기, 의료용물질생성기, 자기치료기, 면거즈, 세폭직물, 면이불솜, 타올, 양말편조업, 장갑편조물, 자수제품, 생석회, 탄산가스, 아연화, 골판지상자, 골판지, 습강지광택제, 재생타이어, 고무장갑, 플라스틱용기, 상업인쇄업, 폴리스티렌페이퍼시트, 크라프트지부대, 발포폴리스티렌관 및 판, 접착제, 재생플라스틱원료, 연마자석,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화장품용 유리제품, 연마지 및 포, 아스콘, 석건재, 석공예, 전기절연유, 기타비운활유, 동물약품, 서류전분, 양곡도정업, 옥수수기름, 국수, 당면, 두부, 어육연제품, 적오징어, 조미가공식품, 수산물냉동냉장,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전산업의 산업필수품으로 사용되고있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정책상 해제유보 대상으로 책정함으로써 1998년 이후에도 해제유보하여 계속 존치하게된 최대 사유는

- ①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포장제조업은 업종특성상
 - (1) 주문생산성
 - (2) 다품종 소량규격성
 - (3) 무 Brand성
 - (4) 원가 구성상 원자재 점유비 고율성
 - (5) 납기단기성
 - (6) 운임이 많이드는 부피산업상
 - (7) 지역사회분산 분포, 고유 중소기업이란 특징이 있는점과
- ② 골판지포장제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규모 효율

- 성이나, 품질차이가 없는 점
 - ③ 골판지 포장제조업은 전산업이 사용하는 산업필수품임으로 대기업그룹 전 업체가 자동케이스 수요처이기 때문에 자사그룹 수요를 독점 공급하게되며
 - ④ 골판지 포장의 대기업사용비율이 60%이상 점유하기 때문에, 고유업종 해제시 대기업 계열 기업의 수요·공급 독점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대기업 참가가능성이 높음으로, 그 결과 대기업 그룹계열이 없는 많은 중소 골판지 포장업자는 설 땅이 없게 되어 전멸하게 된다는 근거에 의한것이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은 고유업종으로 계속 존치해야하는 근거와 사유에 관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고유업종 검토자료 [I] 및 [II]전문을 다음에 소개하여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검토자료 [I]

1994. 3. 14 작성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업종명 : 골판지제조업(21021)
골판지상자 제조업 (21021,21024)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현황

1992년도

구 분	시장규모(단위:억원)							국내생산업체 현황				수입증가율	
	내 수			수 출				대기업 수	시장 점유율	중소 기업수	시장 점유율	수입 증가율	수출 증가율
업 종	국산	수입	소계	대기업	중소 기업	소계	소계						
골판지 제조업	6,951	20	6,971				6,971	2	3.0	167	97.0		
골판지상자 제조업	9,220	20	9,240	15	75	90	9,330	2	3.0	167	97.0		

- 주 : 1. 이표의 생산업체는 골판지를 제조하고 제조한 골판지로 연속하여 골판지상자를 일관제조하는 업체임
 2. 골판지에는 자가투입 골판지생산분 및 판매 출하분의 합계임
 3. 대기업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상 기준임
 4. 본표 수출은 직 수출임

2. 품목의 특성

① 골판지 포장공업의 중소기업형 해당여부

- (1) 주문 생산성 : 골판지 포장공업은 전량 주문생산 특성있음
- (2) 다품종 소량 생산성 : 포장 상품마다 치수, 크기, 인쇄사양이 달라 그 포장은 다품종소량, 다규격임
- (3) 무 BRAND성 : 골판지 포장은 상표, 품질 특성이 없는 무 BRAND 특성있음
- (4) 원자재 원가 점유비 고율성 : 원가 구성상 원자재 점유비가 70%이상 고율로서 저 부가가치 산업임

구 분	경쟁국 (대 만)	선 진 국		사 유
		미 국	일 본	
시 설	동 등	동 등	동 등	한국도 고속화, 자동화, OA, FA 상당 수준임
기 술	동 등	열 위	열 위	대만과는 동등 또는 우위임
품 질	동 등	열 위	열 위	원자재 품질차 있음
가 격	열 위	열 위	열 위	고정비, 유통 COST가 높고 생산LOT가 문제

② 경쟁력 비교(대 한국)

③ 기술개발 여부

(1)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실적

가.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인 '저온접착 건조 골판지 제조 신기술'을 3년간 개발 현재 공장 실용 시험 단계임

기술개발과제	개발 입안기관	개발 주관기관	참여업체	개발기간	효 과
저온접착건조 골판지제조 신기술개발	한국골판지 포장공업 협동조합	한국화학 연구소	대영포장(주)	1989. 12 ~1992. 12	1. 150℃ 고온 건조에서 100℃ 이하 저온 건조로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주)광신판지 삼보판지(주) 태림포장(주) 부평판지(주) 화성제지(주) 태영판지(주)		
			(주)LG유통 선일포도당(주) 태화기계	(정부출연: 4.81억원, 기업부담:2.05억원)	2. WARP(굽힘)현상저감으로 품질 향상

나. 골판지상자 단체표준 규격 제정으로 농산물의 상품화, 포장화촉진 및 무포장 벌크 수송 농산물의 도시 쓰레기 감량 환경보전 시책기여

- ① 92년도 : 정육, 계란, 수박포장용 골판지상자 단체규격 제정완료
- ② 93년도 : 무우, 배추, 양파, 마늘 포장용 골판지상자 단체규격 제정하여 공업진흥청 승인
- ③ 94년도 계획 : 쌀, 딸기, 복숭아, 절화백합 포장용 골판지상자 단체규격화

다. 수작업 기술이 NC, CNC 자동 조작화

라. 강화 골판지 개발로 압축강도 향상, 인쇄 기술 향상으로 포장재의 고급화 미려화 실현

(2) 기술도입 건수 및 분야

기술 도입 건수	도 입 기 술	기술 도입국
3건	1. 자동차 천정 완충용 골판지	일본
	2. 중량물 포장 3중 골판지 생산기법	일본
	3. 지류제 MOLD완충제	미국

(3) 골판지 포장공업의 R & D 지출비용

91	92	(%) R&D/매출액
0.15	0.25	0.5

(4) 골판지 포장 품질 인증 획득여부

업 체 명	규 모	명 칭	등록번호	규격획득사항	획득일자
한국수출 포장공업(주)	중기업	KS 마크	1440	골판지 KSA 1502	1974. 4. 15
				골판지상자 KSA 1531	1974. 4. 15
동호실업(주)	중기업	KS 마크	1550	골판지 KSA 1502	1974. 4. 15
				골판지상자 KSA 1531	1974. 4. 15
삼보판지공업(주)	중기업	KS 마크	5009	골판지 KSA 1502	1987. 1. 6
				골판지상자 KSA 1531	1987. 1. 6
제일산업(주)	중기업	KS 마크	5770	골판지 KSA 1502	1977. 10. 29
				골판지상자 KSA 1531	1977. 10. 29
동양제지공업(주)	중기업	KS 마크	980	골판지 KSA 1502	1974. 9. 27
				골판지상자 KSA 1531	1974. 9. 27

(5) 골판지 포장 특허권 보유건수 및 업체수

골판지 포장 특허권 보유건수	6 개
업 체 수	3 사

(6) 수요, 공급의 독과점 여부

가. 원료 공급의 독과점 여부

원자재인 골판지원지 제조업체는 아세아제지, LG유통, 조일제지, 대양제지등 4개 대기업자외에 다수 중소기업체 60여사가 연간 180만 M/T(6,000억원) 규모로 생산 공급하고 있어 독과점 현상 없음

나. 제품 공급의 독과점 여부

골판지포장제조 중소기업자는 167개로 각 지방에 분포되어 독과점 우려 없으나, 대기업 60% 시장 독점 공급시 독과점 우려 있음

(7) 타 산업과의 관련

가. 골판지 포장공업의 건전 발전과 품질, 가격경쟁력은 주원자재인 골판지원지의 품질, 가격에 크게 좌우됨으로 골판지 포장공업과 골판지 원지 공업과는 상호 보완 관계임

나. 일관 공정체제 유지 필요성 여부

- ① 골판지포장공업이 수공업, 저속, 노동집약시대에는 다공정 분리현상이 부득이 하였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전자동, 고속화 기술수준 추세이며, 중간재의 이동에따른 수송비가중, 제품 품질의 손상 요인상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는 일관 공정체제 유지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구조개편 되고 있음
- ② 골판지 포장제조업은 골판지에서 상자까지 일관생산방식이 세계적인 기본 업체임
- ③ 골판지원지부터의 일관공정은 순수일관공정이 아님
- ④ 골판지를 구입 단순 제사가공업은 일관기업에 비하여 골판지 운송비 및 골판지 판매 이윤 이중부담으로 상자가격 고가이나, 소량 LOT생산, 특수규격 포장재 생산에 기여됨

(8) 고유업종 해제시 대기업의 참여가능성

골판지포장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유업종제도 존속시까지 계속 지정되어야 함

- ① 골판지포장은 다품종 소량 다규격 제품임
- ② 전량 주문 생산 단순가공임
- ③ 부피가커 운임이 많이 들고, 납기가 단기인 JIT제품으로 지역 분산 분포의 전형적 중소기업형임
-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 효율성이 거의 차이 없음
- ⑤ 골판지 포장재는 산업필수품(상품 생산회사는 전부 사용)임으로, 대기업 그룹 자사 전업체가 자동 케이스 골판지 포장수요 시장임으로 대기업(내지 계열사)의 골판지 포장시장 참여는 필연적임
- ⑥ 참여 가능 대기업 그룹은 20여개사 기업과 농협등 공법인이 있음

3. 고유업종해제 예시기간에 대한 종합의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고유업종 존속 또는 해제예시 여부	계속존치 사유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고유업종 제도 존속시까지 계속 존치 필요	1. 1993. 12. 31현재 골판지 포장공업은 10년 주기 불황으로 26개업체 530억 부도휴폐 불황 계속임
2. 예시할 경우 고유업종제도 존속 최종년도 까지	2. 수요대 공급이 100:145임 3. 대기업그룹 자사계열 60% 포장상자 사용시장 참여, 독점 공급하게 되면 계열없는 중소 골판지 포장업자는 도산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해제 최종년도까지 경쟁력 자구노력기간 부여가 필요함